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 선고 2020가합5773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3. 4.

판 결 선 고 2022. 4. 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의 2019. 8. 13.자 금원지급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70,603,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9. 2. 28.경 주식회사 C에 B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3,95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3.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2019. 3. 29.경 E에게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F 토지를 168,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4.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2019. 8. 12.경 주식회사 G에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H 등 15필지를 1,80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2019.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2019. 8. 12.경 주식회사 I에 B 소유의 인천 옹진군 J 등 14필지를 1,870,5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제4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으며, 2019. 8.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는 2019. 8. 13.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제4매매대금 중 570,603,693원(=411,277,852원+159,325,841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한다).

바. 종로세무서장은 B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4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부과하였다.

구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제1매매계약	2019. 3. 31.	2019. 9. 14.	243,524,850	23,758,690	267,283,540
		2019. 10. 14.	243,990,540	21,959,070	265,949,610

제2매매계약	2019. 4. 30.	2019. 10. 14.	24,022,440	2,161,950	26,184,390
		2019. 11. 9.	23,833,610	2,145,000	25,978,610
제3, 4매매계약	2019. 8. 31.	2020. 2. 4.	654,739,700	44,194,890	698,934,590
		2020. 4. 2.	654,739,700	34,373,810	689,113,510
합계			1,844,850,840	128,593,410	1,973,444,2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고(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2019. 3. 31. 및 2019. 4. 30. 성립된 것으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은 비록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후인 2019. 8. 31. 성립된 것이지만, 양도소득세채권의 발생원인인 이 사건 제3, 4매매계약이 그 전인 2019. 8. 12.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양도소득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관한 양도소득세채권(가산금 포함)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B가 차용하였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통모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3) B의 무자력

갑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B의 적극재산은 합계 1,034,751,324원(= K조합 예금 1,034,727,911원 + L은행 예금 9원 + M은행 예금 23,381원 + N조합 예금 23원), 소극재산은 합계 2,544,047,943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1,973,444,250원 + 아래 4)에서 인정하는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570,603,693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4)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갑 제4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무상으로 공여한 것으로서 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아래와 같은 대출금의 액수와 지급경위 및 지급시기, 대출금의 변제경위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015. 8. 20.자 및 2016. 6. 24.자 대출금을

B에게 대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해 B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2015. 8. 20.경 K조합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인천 용진군 O 토지, 피고 소유의 P 토지, B 소유의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대출금은 순차적으로 B에게 지급되었다.

② 피고는 2016. 6. 24.경 K조합으로부터 159,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딸 Q 소유 경기 가평군 R 등 4필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6,7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대출금 중 158,000,000원은 그 다음날 B에게 지급되었다.

③ B는 2019. 3. 29.경 이 사건 제2매매대금 168,000,000원으로 2015. 8. 20.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다.

④ 피고는 2019. 8. 13.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 지급받은 570,603,693원을 그대로 K조합에 입금함으로써 2015. 8. 20.자 나머지 대출금 411,277,852원 및 2016. 6. 24.자 대출금 159,325,841원을 상환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가 2019. 4. 2.부터 같은 해 6. 3.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합계 1,210,0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을 초과하는 돈을 이미 지급하였고,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이미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입금행위가 위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인지 여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B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변제한 것임은 앞서 2. 나. 4)에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조합, N조합, L은행, M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와

피고는 부부 사이인 점, ② 피고가 K조합 대출금은 B가 사용한 돈임에도 피고 명의로 대출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B가 과다채무자로서 신용등급이 낮아 그 명의로 대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도 평소 B의 변제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와 B는 2019년경 단기간에 걸쳐 그들 소유의 부동산을 대거 매각하여 왔고, 그 매매대금 중 상당액이 피고에게 송금되기도 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가 이에 관하여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정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제1매매대금 중 800,000,000원을 지급받아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B는 이 사건 제2매매대금으로 피고 명의의 2015. 8. 20.자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는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 소유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피고의 적극재산을 증가시키거나 피고의 소극재산을 감소시켜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B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지급액 570,603,6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이종찬, 판사 전승환

1) 원고는 '증여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원인으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통모에 의한 변제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따라서

위 청구취지를 ‘금원지급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선택한다.